

정책 및 규정

규정 1. 일반사항

규정 1.1 디스트리뷰터 계약과 관련된 정책

본 정책 및 규정은 유사나 디스트리뷰터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회사(본 정책 및 규정, 모든 회사자료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회사"는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를 뜻한다.)의 재량에 의해 수시로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본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가장 최근의 회사정책 및 규정에 따라 사업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규정 1.2 목적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유사나 독립 디스트리뷰터와의 관계 정의
- 유효 가능한 사업관행 기준 제시
- 디스트리뷰터의 사업구축 및 사업활동 보호

규정 1.3 정책 및 규정 등의 변경

회사는 수시로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 정책 및 규정, 유사나 보상플랜, 가격표 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 정책 및 규정과 가격 정보(유사나 보상플랜 제외)의 변경 내용은 모든 액티브 디스트리뷰터에게 배포되는 공식적인 회사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 고지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사는 유사나 공식 웹사이트나 간행물을 통해 변경된 보상플랜의 효력 발생 3달 전에 이를 통지한다.

규정 1.4 지연

회사는 파업, 노동 쟁의, 폭동, 전쟁, 화재, 사망, 공급의 장애,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등을 포함하여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의무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규정 1.5 분리조항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효력이 없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나머지 계약조건은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효력을 상실한 조항, 비합법적 또는 실행 불가능한 조항은 계약서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 1.6 정책 및 규정의 제목

본 정책 및 절차 규정에 소개되어 있는 제목은 참고 목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디스트리뷰터 계약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규정 1.7 일부조항 적용면제

회사는 어떤 경우든 디스트리뷰터로 하여금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나 사업할 동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회사가 매우 드문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해당법규 일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도 있다.

규정 1.8 전문 서비스 관련 책임

디스트리뷰터는 법률, 재무나 기타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규정 2. 디스트리뷰터 신규등록

규정 2.1 디스트리뷰터 신규등록 자격 요건

- 유사나가 진출해 있는 국가의 기준으로 성년이 된 자
- 유사나가 사업활동을 승인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회사정책 및 규정, 유사나 보상플랜을 충분히 이해하는 자
-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회사에 제출한 자
- 연락 가능한 현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회사에 제공한 자

- 지정된 가격으로 유사나 스타터킷을 구매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인 자
- 디스트리뷰터 자격은 개인에게만 부여되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법인 및 회사(다단계판매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등 관련 법령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 회사는 신규 디스트리뷰터가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에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연락처 및 기타정보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거나 제출된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를 등록시점부터 무효로 할 수 있다. 또한, 신규등록 후 디스트리뷰터의 의무로서 연락처 및 기타 정보의 변경 등으로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기재내용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회사의 재량으로 디스트리뷰터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규정 2.2 스타터킷

유사나 디스트리뷰터가 되기 위해서 유사나 제품을 구매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신규 디스트리뷰터에게 유사나 제품과 서비스, 판매 기법, 판매보조용품 및 기타 자료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디스트리뷰터에게 스타터킷의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판매 가능한 스타터킷을 반품할 수 있다.

규정 2.3 디스트리뷰터 ID 번호

회사는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 원본을 접수하면 동 디스트리뷰터에게 고유한 디스트리뷰터 ID를 부여하고 디스트리뷰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제공한다. 후원수당이 발생한 시점에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에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세금과 기타 법적으로 요구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디스트리뷰터는 고객지원부에 제품을 주문하거나 후원수당 및 보너스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디스트리뷰터 ID를 사용해야 한다.

규정 2.4 임시 자격

디스트리뷰터 신청인은 디스트리뷰터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등록함으로써 서면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가 도착할 때까지 임시 디스트리뷰터 자격 및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회사에 디스트리뷰터 신청(계약)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시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획득한 신청인은 신용카드나 은행 송금의 방법으로 스타터킷을 구매할 수 있다. 임시 디스트리뷰터 자격 및 번호는 자격 취득 후 회사가 신청인의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원본이나 온라인 등록의 경우 전자 서명을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21일 동안 유효하다. 회사는 임시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유지되는 21일 이내에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원본이나 온라인 등록의 경우 전자 서명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회사 등록 시스템으로부터 제외시키고 후원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디스트리뷰터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원본이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는 동 신청인에게 영구 디스트리뷰터 번호를 부여한다.

규정 2.5 디스트리뷰터 혜택

회사가 디스트리뷰터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를 승인하는 경우 신규 디스트리뷰터에게는 유사나 보상플랜과 디스트리뷰터 계약상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 된다. 이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디스트리뷰터 가격으로 유사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 유사나 보상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보너스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유사나 프리퍼드 커스터머나 디스트리뷰터로 후원하고 하위 라인 그룹을 구축함으로써 유사나 보상플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받는다.
-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트레이닝, 동기부여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 회사가 디스트리뷰터를 위해 개최하는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유사나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활동을 통해 소매 이익을 올릴 수 있다.
- 디스트리뷰터의 자격을 유지하고 보상플랜에 따른 수입을 수령하거나 디스트리뷰터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상의 기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디스트리뷰터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는 물론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변경 조항을 포함하여 본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함을 뜻한다.

규정 3. 디스트리뷰터 자격

규정 3.1 디스트리뷰터의 가족 및 이에 준하는 자의 행위

디스트리뷰터의 가족(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디스트리뷰터 계약조건에 위배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동 행위는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규정 3.2 유사나 보상플랜 규정의 준수

디스트리뷰터는 공식적인 회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유사나 보상플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사업기회와 결부시키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를 소개해서는 안 된다. 디스트리뷰터는 또한 공식적인 회사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프리퍼드 커스터머나 잠재고객 또는 디스트리뷰터에게 유사나 사업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되며, 디스트리뷰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회사 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프리퍼드커스터머나 잠재고객 또는 디스트리뷰터에게 공식적인 회사 자료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품의 구매나 비용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규정 3.3 광고

디스트리뷰터는 유사나와 유사나 사업기회, 보상플랜, 유사나 제품에 대한 판매 및 홍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례하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동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골드 디렉터 이상의 직급을 달성한 디스트리뷰터만이 유사나와 유사나 사업기회, 보상플랜, 유사나 제품 또는 그들의 유사나 사업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개인적인 판매, 마케팅 보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현재 회사가 제작하였거나 사용을 허락한 판매보조물만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보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나와 유사나의 제품, 서비스 또는 보상플랜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메일, 메시지, 보이스 메일 메시지 녹음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사나의 제품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 및 판매원 모집 정보, 브로슈어, 전단지, 팸플릿, 포스터, 우편엽서, 서신, 신문 항목별 광고 등을 말한다. 개인의 판매 도구, 판촉물, 광고, 인쇄물(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골드 디렉터 이상의 직급을 달성한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사업 또는 유사나 사업기회 홍보를 위한 해당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의 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안물에 대한 사본을 윤리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광고물이 접수되면, 회사는 자료의 형식과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제안광고물을 검토하는 데 드는 심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회사는 신청인이 유사나 사업 활동을 홍보하고 보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승인신청 자료에 대해 승인 또는 비승인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한다.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골드 디렉터 이상 직급자만의 사용이 허가된다. 그러한 자료를 수익을 위해 다른 디스트리뷰터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사전에 허가 받은 광고물이 현재의 최신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장하는 것은 디스트리뷰터의 의무이다. 회사는 광고물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스트리뷰터는 그러한 철회와 관련하여 야기된 피해 또는 보수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한다.

규정 3.3.1 텔레비전 및 라디오

디스트리뷰터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윤리교육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정 3.3.2 미디어 접촉

디스트리뷰터는 유사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미디어 접촉 상황을 윤리교육부에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은 불특정다수에게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규정 3.3.3 상표권과 저작권

•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로 회사의 상호나 상표,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광고형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하는 경우 반드시 "유사나 독립 디스트리뷰터"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 디스트리뷰터는 전화 상담 시 상대방이 회사와 통화하고 있다고 믿게 하거나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 디스트리뷰터는 회사가 지원하는 모든 행사, 이벤트, 연설문 등에 소개된 내용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촬영, 녹음 또는 복제할 수 없다.
- 디스트리뷰터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초청 연사, 대표, 대변인, 임직원 및 기타 디스트리뷰터의 발표나 강의를 촬영, 녹음 또는 복제할 수 없다.
- 디스트리뷰터는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와 CD 등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나 회사와 관련된 개인의 이름, 사진이나 이미지, 저작물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을 본인 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쇄 매체나 전자 매체를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저작물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쇄 매체나 전자 매체를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디스트리뷰터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상표명, 상표, 서비스명, 서비스마크, 제품명이나 이들과 관련된 파생 명칭을 인터넷 도메인명이나 이메일 주소로 등록, 판매하거나 동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규정 3.3.4 디스트리뷰터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용

디스트리뷰터는 회사가 본인의 성명, 추천의 글 (또는 유사나, 유사나 제품, 그 사업기회에 관련된 인쇄 및 녹음된 형태의 다른 추천의 글로 번역, 의역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 형태로 재생산된 것을 포함함), 초상 또는 이미지 (사진, 디지털형태의 비디오, 또는 필름형태로 제작 및 기록된 것)를 유사나 사업기회, 제품에 대해 광고, 홍보하거나, 또는 유사나의 직접 또는 후원한 행사에 공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규정 3.3.5 소셜 미디어

- 디스트리뷰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유사나의 관계를 소개하고 유사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방문자가 디스트리뷰터의 개인 유사나 웹페이지 (PWP)를 포함한 유사나의 공식 웹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
- 유사나 공식 교육 도구 및 기타 공식적으로 제공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활동: 다가오는 미팅 또는 행사 홍보, 자신의 유사나 쇼핑 카드나 기타 유사나 승인 자료에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제품 홍보, 방문자가 제품 또는 비즈니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
- 디스트리뷰터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유사나를 홍보할 때 비즈니스 및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정책 및 규정 3.4.1과 3.4.2 및 5.1을 참조하십시오.
- 디스트리뷰터는 모욕적인 언어, 저속, 비방,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게시해서는 안 되며, 정보를 게시하는 해당 소셜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유사나는 모욕, 저속, 비방, 위협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유사나는 디스트리뷰터가 유사나의 이름이나 등록 상표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이나 트위터 핸들 이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사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게시물을 디스트리뷰터가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 적용되는 정책을 포함한 유사나의 홍보 정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본 정책 및 규정 3.3을 참조하십시오.

규정 3.4 디스트리뷰터의 제품 소개 및 수입 공개

규정 3.4.1 제품 소개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는 유사나 제품을 소개하는 경우 회사가 배포하는 공식 문서에 언급된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디스트리뷰터는 유사나 제품이 질병의 치료, 치유, 진단, 완화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유사나 제품이 의약품이라고 오해하도록 할 수 있으며, 디스트리뷰터 계약의 위반은 물론 국내 법률에 위배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 3.4.2 수입 공개

디스트리뷰터는 유사나 사업기회 또는 유사나 보상플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상담 시 회사에서 제공한 공식적인 문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유사나 사업을 통한 예상 수입이나 자신의 수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수표나 통장 포함)

규정 3.4.3 면책 조항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제품, 서비스와 보상플랜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디스트리뷰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과 손해 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에 대해 회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 본 조항은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3.5 일반 소매유통망의 이용

디스트리뷰터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주요 수입원이고 제품의 판매가 부수적인 목적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유사나의 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승인된 서비스 업체는 헬스클럽, 뷰티샵, 내과 병원이나 척추 교정 센터를 포함하며, 승인되지 않은 판매 중심의 업체에는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 개인 블로그와 약국 등이 포함된다. 유사나 디스트리뷰터가 의도적으로 회사가 인정할 수 없는 제3자에게 유사나 제품을 공급하고 그 제3자가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유통망을 통해 소매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본 규정 및 정책의 중요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규정 3.6 인정되지 않는 리크루팅 활동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직접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다단계 판매회사(이하 "직접판매 회사"라 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유사나 제품 및 서비스 이외의 판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리크루팅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사나 고객이나 디스트리뷰터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타 직접판매회사에 후원하거나 등록시키는 행위. 여기에는 유사나 프리퍼드 커스터머나 디스트리뷰터에게 타 직접판매회사를 소개하거나 동 목적을 위해 이루어 지는 프레젠테이션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 또는 암시적으로 등록을 유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유사나 프리퍼드 커스터머나 디스트리뷰터를 타 직접 판매회사에 모집 또는 등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분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타 직접판매회사를 위해 형태를 불문하고 본인이 표시되거나 언급된 것을 포함한 마케팅 자료나 테이프 또는 프로모션 도구 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타 직접판매회사를 위해 형태를 불문하고 본인의 이름 및 초상등이 사용되고 언급되어진 홍보자료나, 유사나 회원의 유인등록 및 적극적 등록 권유를 위한 자료 등을 만드는 행위
-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사나 잠재 고객 또는 디스트리뷰터에게 판매 또는 권유하거나 프로모션하는 행위. 유사나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경쟁사 제품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타 모든 건강 식품은 유사나 제품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므로 가격이나 품질, 성분, 영양소 함량과 관계없이 경쟁사 제품으로 간주한다).
- 타 직접판매회사의 보상플랜, 비즈니스 기회, 제품, 인센티브와 결합시켜 유사나 제품의 구매를 권유하거나 유사나 보상플랜을 프로모션하는 행위
- 유사나 미팅, 세미나, 제품 설명회, 컨벤션 등을 포함한 회사 행사에서 유사나 제품이나 보상플랜과 결합시켜 유사나 이외의 제품을 소개하는 행위
- 디스트리뷰터가 잠재 사업자나 고객을 유사나 미팅 또는 행사에 동반하는 경우 다른 디스트리뷰터는 해당일로부터 14일 동안 동 잠재 사업자나 고객을 회사 혹은 타 직접판매회사에 등록시키기 위해 후원할 수 없다. 단, 잠재 사업자나 고객을 미팅에 초대 한 디스트리뷰터가 다른 유사나 디스트리뷰터에게 동 잠재 사업자나 고객이 회사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동 잠재 사업자나 고객을 회사에 등록시키기 위한 후원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본 규정의 위반은 다른 디스트리뷰터들의 사업활동 및 성장은 물론 회사 전체의 사업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본 규정을 위반하는 디스트리뷰터는 자격이 박탈된다.
- 디스트리뷰터가 타 직접판매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동 직접판매회사에 디스트리뷰터로 등록, 보상을 수령하거나, 단독 소유나 파트너십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수탁인이나 수혜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유사나 리더십 보너스나 엘리트 보너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타 직접판매 회사와 동시에 유사나 리더십 보너스나 엘리트 보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원래의 참여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본 계약의 중대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 타 직접판매회사에 참여하는 디스트리뷰터에게는 DLM에 포함된 고객 명단을 포함하여 대외비로 간주되는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규정 3.6.1 계약 해지 후의 리크루팅 활동 금지

자격을 상실한 디스트리뷰터는 계약 해지 후 1년 동안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나 프리퍼드 커스터머에게 다른 직접판매회사에 등록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은 디스트리뷰터 계약 조건에 따라 디스트리뷰터 계약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3.6.2 하위라인 조직도

유사나 하위라인 조직도는 중요한 사업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비밀 정보이다. 따라서 디스트리뷰터는 유사나 사업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조직도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디스트리뷰터와 회사는 본 계약서의 비밀준수 조항 및 비공개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디스트리뷰터에게 하위라인 조직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디스트리뷰터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나 종료 후 5년 동안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 동업자, 협회나 법인을 포함한 기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하위라인 조직도에 포함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 회사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 조직도에 기재된 디스트리뷰터나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타 직접판매회사에 참여하도록 리크루팅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본 규정은 계약의 해지나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규정 3.6.3 기만 및 위해 행위

디스트리뷰터는 잠재 고객에게 유사나 제품, 사업기회, 유사나 보상플랜, 정책 및 규정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설명해야 한다.

- 유사나 보상플랜과 관련한 자료를 잠재 고객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 유사나 보상플랜을 통한 수입은 디스트리뷰터의 후원활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매출 및 판매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수입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수입 자료를 제공한다.
- 특정상황에서 거둔 과거의 수입이 반드시 향후 수입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다.
- 디스트리뷰터가 사업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출할 수도 있는 비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디스트리뷰터가 예상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업활동에 투자해야 할 시간에 대해 과장되게 언급하지 않으며 소득이나 수입이 보장된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하위라인을 구축해줄 것이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지 않는다.
- 특정 고객이나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유사나 제품 또는 유사나 보상플랜을 승인하거나 인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 보상플랜의 조작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보상플랜 조작이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나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승급이나 후원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판매유통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지 않는 대량의 제품구매, 각종 주문을 본인조직 하위라인의 특정 디스트리뷰터 앞으로 하거나, 그 밖에 미합중국 연방, 주 또는 대한민국의 피라미드 행위 금지 관련 법률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을 말하며, 그러한 보상플랜 조작행위 등은 회사의 재량에 의해 후원수당 수령자격의 정지 또는 회원자격 박탈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의 어떠한 행위가 회사나 또는 다른 디스트리뷰터에게 피해를 주거나, 파괴적이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규정8.3(징계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 3.7 법인의 디스트리뷰터 등록금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신탁회사 등 법인은 유사나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없다.

규정 3.8 개인 신상 정보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자격이나 신청과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 디스트리뷰터 신청 절차 처리

- 하위라인 조직도 작성
- 디스트리뷰터 미팅 및 트레이닝과 같은 서비스 제공
- 디스트리뷰터 혜택 제공을 위한 행정 업무
- 정책, 보상플랜과 전략의 개발 및 시행
- 유사나 매거진, 프로모션 자료, 그룹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개인 신상 정보 게시 자료 제공
- 관련 법규 및 정부 또는 경찰 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이상의 활동이나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타 목적

규정 3.9 독립 계약자 신분

디스트리뷰터는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서 프랜차이즈나 사업기회의 독점 소유자가 아니다. 회사와 유사나 디스트리뷰터 간의 계약은 고용계약이나 대리점, 동업 또는 합작투자가 아니며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독립 계약자로서 각자 자신의 수입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규정 3.10 보험

규정 3.10.1 사업활동과 관련한 보험 가입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규정 3.10.2 제조물 책임 보험 범위

회사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와 디스트리뷰터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회사 보험 정책은 독립 디스트리뷰터가 관련 법률과 디스트리뷰터 계약에 따라 유사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독립 디스트리뷰터에게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벤드 보증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회사 제조물 책임 보험 정책은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디스트리뷰터 본인의 위법행위 결과로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 3.10.3 책임의 주체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와 관계된 미팅, 이벤트, 활동, 워크샵, 휴가나 모임을 위한 이동이나 여행이 본인의 독립 비즈니스 활동의 일부로서 회사의 직원, 에이전트나 업무 대행인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전부 또는 부분 적으로 회사의 초대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모든 위험 부담과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규정 3.11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디스트리뷰터는 사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 3.12 디스트리뷰터 자격

디스트리뷰터 자격은 한 사람에게 하나만 부여되며 디스트리뷰터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된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규정 3.12.1 배우자 등록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공동으로 유지하기 희망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신청서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이 경우,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 정책 및 규정, 사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규를 공동으로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둘 중 한 사람이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해지할 경우 제3자에게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규정 3.13 재포장 및 라벨 교체 금지

디스트리뷰터는 모든 유사나 제품, 정보, 자료 또는 프로그램 등에 본래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교체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재포장이나 라벨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유사나 제품은 반드시 원래의 용기에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 라벨교체나 재포장 행위는 법률에 위배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재포장이나 라벨 교체의 결과로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민사상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규정 3.14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매매, 권리이전 및 양도

디스트리뷰터는 본 정책 및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한 디스트리뷰터 자격 또는 비즈니스 센터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권리를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둘 이상의 디스트리뷰터가 그 자격을 결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 3.15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분리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가 그 자격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라인 및 하위라인 조직의 수입이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배우자 등록 자격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배우자 등록 자격이 분리되는 경우 공동 소지자 중 한 사람이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유지하며 나머지 다른 사람은 디스트리뷰터 자격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 배우자 등록 자격이 분리되는 경우 회사는 하위라인 조직을 분할하거나 배우자 등록 자격 소지자에게 후원수당이나 보너스를 나누어 지급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표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된다.
- 배우자 등록 자격이 분리되는 경우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6개월의 대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규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부부가 배우자 등록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즉시 다른 스폰서의 후원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트리뷰터 권리를 포기하고 신규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할 수 없다.

규정 3.16 디스트리뷰터 자격 승계

디스트리뷰터가 사망하거나 활동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후원수당, 보너스 및 하위라인 조직에 대한 디스트리뷰터의 권리 및 책임이 그 상속자에게 양도된다. 디스트리뷰터가 사망 혹은 활동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상속자는 반드시 법률에서 인정하는 유언장 등 상속권을 입증하는 서류, 사망 또는 활동 능력의 상실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와 함께 디스트리뷰터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를 윤리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라도 다른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 유산 관리인, 상속인, 승계인, 수탁인, 개인 자격의 대리인이나 유산 집행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규정 3.17 세금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의 모든 제품 및 비즈니스 도구의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매 목적으로 등록된 총괄등록사업자 및 개별등록사업자는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세납부 및 소매매출액에 대한 소매이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퍼드 커스터머(소비자형회원)를 제외한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당사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 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익는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고객센터로부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3.18 전화 및 이메일 마케팅

유사나헬스사이언스는 스팸 메시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차별 배포하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SMS 등)를 디스트리뷰터 또는 고객들에게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나의 디스트리뷰터들은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거나 디스트리뷰터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트리뷰터들은 유사나의 제품 및 사업 기회를 마케팅·홍보 시에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하는 메시지는 (1) 이미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혹은 가족, 친지, 지인인 경우, (2) 이미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 혹은 가족, 친지 등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유사나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2.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하는 메시지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1) 분명하고 정확한 이메일 제목, (2) 정확한 발송자 정보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사업 소개 목적의 경우, 소개해준 지인의 이름, (4) 추가적인 옵트아웃 기능 또는 이메일 수신 중단 기능 등록을 완료하시면 유사나 구매 계약서의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유사나코리아와 디스트리뷰터들로부터 고객 정보 또는 제품 소개 등과 관련하여 이메일, 문자 메시지, SMS, 팩스, 전화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후에 언제든지 유사나코리아 또는 유사나 디스트리뷰터에게 이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규정 3.19 활동 구역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독점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디스트리뷰터들은 자신이 유사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 판매구역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규정 3.20 상품 전시회 및 박람회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상품 전시회나 박람회장에서 유사나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회사가 나타나고자 하는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베틀시장, 중고품 시장, 노천 시장,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는 유사나 제품을 진열 혹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신규 디스트리뷰터 및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리크루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 전시회나 박람회장엔 유사나 제품을 진열할 수는 있으나 제품을 판매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행사장에 진열된 모든 자료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것이어야 하며 행사에 참가한 디스트리뷰터는 독립 디스트리뷰터로서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규정 3.21 후원인 자격의 양도

규정 3.21.1 이중 등록

잠재 고객은 본인의 후원인을 선택함에 있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 잠재고객과 함께 활동을 수행하는 최초의 디스트리뷰터가 후원인 자격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후원인 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식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잠재고객이나 동 잠재고객을 대리한 디스트리뷰터가 각각 다른 사람을 후원인으로 하여 두 건 이상의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먼저 접수되고 승인된 디스트리뷰터 신청서와 계약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디스트리뷰터의 후원인 자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결정권은 회사에게 있다.

규정 3.21.2 라인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라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안이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회사에 등록된 경우
- 디스트리뷰터의 잘못으로 라인 배치가 잘못된 경우 후원인 라인을 변경하여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 단, 라인 변경 신청은 등록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라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후원인과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후원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라인 변경 신청 시점에서 이미 하위라인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라인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인 변경이 승인된 경우 이미 획득한 후원수당과 보너스가 조정되며, 라인 변경은 신청서가 회사에 접수되어 승인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디스트리뷰터가 서면 통지를 통해 본인의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해지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원하는 후원인을 선택하여 재등록할 수 있다.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 보너스와 후원수당을 포함하여 기존 라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즉, 디스트리뷰터로서 유사나 제품의 구매와 판매 활동을 포함하여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해지하고 곧바로 원하는 후원인을 선택 하여 재등록이 가능하다.
- 이중 등록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중 등록이란 회사 서류상에 현재 프리퍼드 커스터머 나 디스트리뷰터로 계약을 체결해 있거나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라인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을 중복 등록시키는 것을 뜻한다. 본 정책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가명, 법인, 신학, 허위 ID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자신의 하위라인 조직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른 유사나 디스트리뷰터의 폼이나 신용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규정 4. 디스트리뷰터와 후원인의 책임

규정 4.1 지속적인 감독, 트레이닝 및 판매 활동

다른 사람을 유사나 신규 디스트리뷰터로 후원한 디스트리뷰터는 제품 지식, 효과적인 판매 기법, 유사나 보상플랜과 정책 및 규정 등에 대해 신규 디스트리뷰터를 트레이닝시켜야 한다. 디스트리뷰터는 또한 전문가다운 태도와 윤리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활동

을 전개해야 하며, 제품을 효과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위라인 조직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가 다양한 리더십 단계를 통해 성장해나감에 따라 하위라인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트레이닝 및 동기 부여에 대한 책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신규 디스트리뷰터를 후원, 등록시키는 디스트리뷰터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가장 최근의 회사정책 및 규정, 유사나 보상플랜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넌을 통해 동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 4.2 비방 금지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나 유사나의 제품, 유사나 보상플랜 및 회사 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삼간다. 그러한 비방 행위는 정책 및 절차 규정에 대해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규정 4.3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 주문서 등의 제출 지연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신청인, 프리퍼드 커스터머나 프리퍼드 커스터머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양식 및 신청서를 서명이 완료된 다음 날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 4.4 회사 정책에 대한 위반 행위 보고

디스트리뷰터는 회사 정책에 대한 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윤리교육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규정 5. 구매 및 판매

규정 5.1 제품의 판매

유사나 보상플랜은 최종 소비자에게 유사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트리뷰터가 보너스, 후원수당 및 승급을 원하는 경우 소정의 개인 및 그룹실적 조건을 충족 (정책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의 책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판매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디스트리뷰터 제품주문 수량의 최소 70% 이상은 개인소비 또는 기타고객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가 개인적으로 등록한 프리 퍼드 커스터머의 주문수량은 70% 비율 준수 여부 확인 시 포함 계산한다. 디스트리뷰터는 이전 에 주문한 제품들이 개인소비비용이나 최종소비자에게 최소한 70%가 판매되기 전까지는 추가주문을 해서는 안 된다.
- 디스트리뷰터는 제품 판매 일자, 제품 판매량, 제품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공식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2년 동안 발급한 모든 판매 영수증을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구매 관련 기록은 회사가 보유한다.

규정 5.2 소비자에 대한 판매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이 선택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회사의 공식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영수증에는 소비자보호 정책과 고객 환불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규정 5.3 제품의 과도한 구매 금지

회사는 유사나 보상플랜에 따른 후원수당, 보너스 또는 승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디스트리뷰터는 4주 기간 동안 판매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되며, 다른 디스트리뷰터에게 동일한 행위를 중용해서도 안 된다. 후원수당, 보너스 또는 승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특정 디스트리뷰터가 가지고 있는 5개 이상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매주 발생하는 총그룹실적(TGV)의 2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엘리트 보너스 제외)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총그룹실적(TGV)의 2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실적점수는 디스트리뷰터의 스폰서에게 지급되는 매칭보너스에도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디스트리뷰터의 실적점수가 총그룹실적(TGV)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첫 번째 발생된 경우에는 13주 동안 각종 보너스(예: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지급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또 발생될 경우에는 52주로 추가된다. 디스트리뷰터는 초기 스타터킷에 포함된 것 이상의

제품이나 판매보조용품의 재고를 구매할 의무가 없다. 물론 충분한 제품이나 판매보조용품의 구매가 고객이나 신규 디스트리뷰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해줌으로써 하위라인의 구축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 5.4 선수금

디스트리뷰터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제품의 인도 시점에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제품의 공급을 전제로 미리 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규정 6. 보너스와 후원수당

규정 6.1 보너스와 후원수당 지급 주기

회사가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수당 발생 1주 후 2주째부터 주 단위로 지급된다.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후원수당 금액을 확인하고 오류나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동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가 해당 기간 내에 오류나 금액의 차이에 대해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 6.2 보너스 및 후원수당의 조정

디스트리뷰터는 제품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과 보너스를 받는다. 따라서 디스트리뷰터나 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위해 판매된 제품을 반품할 경우 판매 실적에서 후원수당 및 보너스 금액을 조정한다. 회사는 반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2주 이내에 상위라인 디스트리뷰터의 총그룹실적(TGV)에서 반품된 제품에 해당하는 실적을 제외시킨다.

규정 6.3 후원수당 자격의 상실

후원수당과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액티브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디스트리뷰터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규정 6.4 셀라비브 보너스

직접 후원하는 프리퍼드커스터머(PC) 회원이 처음으로 셀라비브 제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 금액의 25%(총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를 후원인에게 지급한다.

규정 7. 제품 보증 및 반품

규정 7.1 제품 반품 및 교환

회사는 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며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 교환이나 반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교환은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으나 구매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불요청 후 재주문할 수 있다.

규정 7.1.1 교환정책

후원수당의 극대화나 보상플랜의 조작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교환요청은 인정하지 않으며, 중대한 디스트리뷰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규정 7.2 반품 정책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 가운데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제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반품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프로모션 자료와 판매보조용품을 포함한 유사나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구매 대금의 5%,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 구매 대금의 7%를 공제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디스트리뷰터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구매 제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과도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2) 디스트리뷰터가 제품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저하시킨 경우
- 3) 유사나 팩 제품의 일부만 반품 요청하는 경우
- 4)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5) 복제 가능한 제품의 포장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포함)이 개봉된 경우

6) 해당 제품이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경우 단, 반품하는 물품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판매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반품된 제품, 스타터킷, 판매보조용품에 대한 환불은 규정 7.3에 따른다. 디스트리뷰터가 환불을 목적으로 스타터킷을 반품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반품하는 제품으로 인해 그 디스트리뷰터 및 상위라인들이 얻은 모든 이익(후원수당, 리더십 보너스, 매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각종 인센티브 등 회사가 제공한 모든 혜택)을 공제 및 환수 할 수 있다.

규정 7.3 반품 절차

디스트리뷰터는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을 위해 고객지원부로부터 반품승인 번호(RMA)를 받아야 한다. 이 번호는 모든 반품 제품에 부여된다.

- 회사에 제품주문 및 자동주문 신청서와 함께 제품을 반품한다.
- 반품 시 배송에 필요한 적절한 포장 상자 및 포장재를 사용한다. 디스트리뷰터는 필요한 경우 반품 배송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가 소매 고객의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고객이 제품을 반품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제품을 전달한다. 반품 포장에는 불만족한 소비자의 철회요청서,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 반품을 원하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규정 7.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제품을 주문한 프리퍼드 커스터머 또는 디스트리뷰터만이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규정 8. 분쟁 해결 및 징계 절차

규정 8.1 디스트리뷰터 간의 분쟁

규정 8.1.1 불만 및 불평

디스트리뷰터가 유사나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불만 또는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디스트리뷰터 당사자끼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불만을 제기한 디스트리뷰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라인 골드 디렉터(Gold Director)에게 그 문제를 보고해야 하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윤리교육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윤리교육부는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불만을 제기한 디스트리뷰터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사례를 입증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불만 발생일, 발생 지역, 부적절한 행위를 최초로 인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규정 8.1.2 윤리교육부의 조사

서면 불만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윤리교육부는 이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참조하여 분쟁 해결 방법을 결정한다. 회사는 회사 재량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정지에는 제품구매, 후원 활동, 후원수당수령, 휴가, 핀 등 보상이나 혜택, 회사주최 미팅에서의 발언권, 진행 중인 직급 및 자격요건 취득의 정지 등 디스트리뷰터의 모든 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한다. 회사가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경우, 관련된 디스트리뷰터가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디스트리뷰터에게 조사 기간 동안 지불되지 않은 후원수당을 조속히 지급한다. 윤리교육부는 필요한 경우 규정 8.3(징계조치)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 8.2 회사와 디스트리뷰터 사이의 분쟁

규정 8.2.1 중재

회사, 유사나 보상플랜, 제품, 디스트리뷰터와 회사 사이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클레임, 제품의 구매, 디스트리뷰터 계약하에서 디스트리뷰터나 회사의 행위와 관련된 클레임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단, 디스트리뷰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는 미국 중재패널에 등록된 상거래 법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한 명의 중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직접판매산업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중재에 참가하는 각 당사자는 법률 서비스 비용과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가 회사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회사가 제기한 클레임에 대해 이의를 표명하여 반대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만 동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디스트리뷰터와 공동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자의 결정은 양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할 법원의 판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중재 사항은 디스트리뷰터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책 및 규정의 어떤 내용도 회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 임시 강제 명령, 예비 강제 명령, 영구 강제 명령권을 발동시키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중재나 기타 소송 절차 이전, 소송 절차 진행 중이나 이후 혹은 중재나 기타 소송 절차와 관련된 결정이나 판정 인도 중 회사의 이익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적용 가능한 기타 구제책을 신청하고 획득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한 디스트리뷰터의 클레임이나 소송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디스트리뷰터 계약에 포함된 디스트리뷰터의 약정 및 합의사항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규정 8.2.2 관할권, 법원의 소재지, 적용 법률의 선택

중재와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한 관할권 및 법원의 소재지는 디스트리뷰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나 유타 주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으로 한다. 디스트리뷰터는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조항에서 언급한 2개의 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디스트리뷰터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유타주의 법률 규정을 따른다. 디스트리뷰터는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조항에서 언급한 2개의 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디스트리뷰터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유타주의 법률 규정을 따른다.

규정 8.3 징계 조치

디스트리뷰터 계약 조건의 위반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의한 불법, 부정, 기만 또는 비도덕적 사업 행위는 다음과 같은 징계 조치가 따르며 징계 조치의 종류와 범위는 회사의 재량에 따른다.

- 특정 정책이나 절차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계약 불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구두 또는 서면 경고
- 디스트리뷰터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계약 조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회사의 보호관찰
- 회사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까지 보상 및 인정의 철회나 유보 또는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참가 제한
- 회사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까지 제품 주문, 회사 프로그램 참가, 유사나 보상플랜상의 승급, 후원인 자격을 포함한 디스트리뷰터의 일부 권리 정지
-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규정조건 들을 충족시킬 때까지 제품 주문, 회사 프로그램 참가, 유사나 보상플랜상의 승급, 후원인 자격 등의 디스트리뷰터의 일부 권리 정지 및 각종 보너스를 포함한 후원수당 지급 보류
- 회사가 입을 손해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기타 벌칙부과
- 디스트리뷰터 자격 해지

규정 9. 제품주문

규정 9.1 주문 방법

디스트리뷰터는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제품을 주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주문이 가능하다. 방문 주문의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제품 구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전화주문의 경우, 제품주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팩스 주문의 경우, 주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고객센터로 전송해야 하며 해당 주문에 필요한 결제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우편으로 주문을 할 경우, 제품주문서에 기재해야 할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역삼동, 서울인터넷서널타워 5층)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고객센터부

인터넷으로 주문할 경우, 개인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전화, 팩스 및 우편 주문의 경우 신용카드 및 온라인송금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규정 9.2 자동주문 프로그램

디스트리뷰터와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유사나 자동주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동주문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디스트리뷰터 자동주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4주 단위로 회사로부터 자동으로 배송받기를 희망하는 제품을 기록해야 한다. 제품 대금은 본인의

등록된 카드(체크/신용)로 자동 결제되며, 결제 금액이 6만원 미만인 택배 주문은 택배비 4,00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된다. (6만원 이상 구매 시 택배비 무료) 기재된 카드(체크/신용)의 유효기간 경과, 한도초과 및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승인불가 되었을 경우 해당 주기의 주문은 자동 해지된다.

규정 9.3 일반 주문 정책

우편 주문의 경우 대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대금 확보를 위해 전화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디스트리뷰터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5 영업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문은 처리되지 않고 반려된다. 회사는 최소 주문 규정을 두지 않으며, 제품과 판매 보조용품을 동시에 주문할 수 있다.

규정 9.4 유사나 제품의 구매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제품구매와 관련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규정 9.5 선주문 정책

회사는 원칙적으로 재고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선주문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시 자동주문 품목에 대해서는 선주문을 할 수 있다.

규정 9.6 물품의 차이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제품의 손상이나 불일치에 대해 회사에 통보 하지 않는 경우, 디스트리뷰터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송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디스트리뷰터 제품 교환 양식이나 반품 양식에 안내된 절차에 따른다.

규정 10. 결제 및 배송

규정 10.1 결제 방법

규정 10.1.1 현금

방문 주문 시, 해당 주문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규정 10.1.2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거래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주문은 처리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는 원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강제 해지될 수 있다.

규정 10.1.3 자동이체 (자동주문만 해당)

디스트리뷰터가 자동주문 결제 방식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해당 디스트리뷰터의 계좌로부터 주문 물품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계좌 출금과 관련된 정책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동주문 자동이체 결제 방식은 2015년 12월 31일부로 폐지

규정 10.1.4 온라인 송금

전화, 팩스, 우편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전화 주문의 경우 주문 시 주문금액을 입금하기 위한 은행 가상계좌를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후 해당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한다. 팩스, 우편주문의 경우 주문서 상단에 'OO은행 가상계좌 입금 희망' 이라고 기재 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게 되며 온라인 주문의 경우 결제에서 KPS 가상계좌 입금을 클릭 후 진행 시 해당은행의 가상계좌가 안내된다.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상계좌의 유효기간은 해당 주 토요일 정오 12시이나 정확한 마감실적 확인을 위해 업무 마감 시간인 금요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입금 완료를 권장하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우체국, KEB 하나 6개 은행 중 택일할 수 있다.

규정 10.2 자동주문 프로그램

자동주문 프로그램은 회사가 철회 요청을 접수할 때까지 유효하며, 고객센터부 업무 마감 시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자동주문 프로그램의 참여는 전적으로 디스트리뷰터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자동주문 프로그램의 참여가 일반 소매 규정이나 70% 소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디스트리뷰터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자동주문은 후원수

당이 지급되는 제품에 국한되며, 판매보조용품은 자동주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 10.3 배송

6만원 미만의 택배주문에 대해서는 최소 택배비 4,000원(부가세포함)이 부과되고, 이 금액은 제품 대금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6만원 이상의 주문은 무료로 배송되며, 택배 마감 전 주문에 한해 당일 출고되며, 1일~3일(영업일 기준) 내에 배송된다. (우편 사서함 또는 기타 택배회사의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일부 도서지역)은 제외됨)

규정 11. 디스트리뷰터 서비스

규정 11.1 디스트리뷰터 자격 변경

규정 11.1.1 일반 사항

모든 디스트리뷰터는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 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는 서면 요청서,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규정 11.1.2 배우자 등록 신청

기존 디스트리뷰터 자격에 배우자 등록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 등록의 서명이 포함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 11.2 하위라인 조직도 및 후원수당 자료

규정 11.2.1 하위라인 조직도

하위라인 조직도의 발급은 디스트리뷰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자동 주문에 DLM(Downline Management)을 추가해도 가능하다. 또한 회사에 하위라인 조직도 신청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하위라인 조직도에는 회사의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조직도 이용과 관련한 제약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3.6.2에 소개되어 있다.

규정 11.2.2 후원수당 자료

후원수당 자료는 후원수당을 받는 모든 액티브 디스트리뷰터에게 우송된다.

규정 11.3 오류 및 의문 사항

후원수당, 보너스, 하위라인 조직도, 주문 내역 또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30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오류, 누락 또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규정 11.4 문제 해결

배송, 주문, 후원수당, 보너스 또는 유사나 보상플랜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고객 지원부에 서면이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규정 12. 비활동 및 계약 해지

규정 12.1 비활동

4주 순환기간 동안 유사나 보상플랜에 명시된 개인그룹실적(PGV)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디스트리뷰터는 동 기간 동안 하위라인 조직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후원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

규정 12.2 강제 해지

회사의 재량에 따른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해지를 포함하여 규정 8.3(징계조치)에 명시된 징계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강제 해지의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하위라인 조직과 하위라인 조직을 통해 발생한 보너스와 후원수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디스트리뷰터 계약이 강제 해지된 디스트리뷰터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전 주까지의 후원수당과 보너스만을 지급받게 된다. 디스트리뷰터 자격이 강제 해지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등기 우편을 이용해 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해지 사실을

을 통지받게 된다. 계약의 해지는 디스트리뷰터의 최근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우송되거나 디스트리뷰터가 실제로 해지 통지를 받은 날 중 시기가 빠른 날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강제로 계약이 해지된 디스트리뷰터는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로서 활동하는 일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는 계약 해지에 대해 윤리교육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는 해지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한 효력이 최종적으로 발생한다. 이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윤리교육부는 이를 검토하고 계약해지 결정에 대해 재검토한 후 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윤리교육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디스트리뷰터 계약이 강제로 해지된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해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유사나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재취득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윤리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른다.

규정 12.3 해지 의사 통지

디스트리뷰터나 프리퍼드 커스터머는 디스트리뷰터 자격이나 프리퍼드 커스터머 자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의사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 시에는 디스트리뷰터나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서명, 성명, 주소 및 ID 번호를 제시해야 하며 다단계판매매원 수첩 및 다단계판매매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규정 12.4 해지의 효과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자발적 해지 또는 강제 해지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디스트리뷰터는 하위라인 조직이나, 하위라인 조직에 의해 발생한 매출에 따른 보너스와 또는 후원수당에 대해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디스트리뷰터 자격의 자발적 해지 또는 강제 해지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디스트리뷰터는 더 이상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유사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며, 유사나 사업과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유사나 로고, 상표를 포함하는 모든 재료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디스트리뷰터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전 주까지의 후원수당과 보너스만을 지급받는다. 강제로 계약이 해지된 디스트리뷰터는 조사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해지된 시점 이전 주까지의 후원수당과 보너스를 지급받는다. 디스트리뷰터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강제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이 해지된 디스트리뷰터는 지급 보류된 후원수당과 보너스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자발적으로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해지한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에 프리퍼드 커스터머 계약서를 제출하여 프리퍼드 커스터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규정 13. 용어 정의

디스트리뷰터

회사가 접수한 디스트리뷰터 신청서 및 계약서를 체결한 개인. 디스트리뷰터는 소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하위라인 조직의 디스트리뷰터 발급, 트레이닝, 동기부여 및 지원노력에 책임이 있다. 디스트리뷰터는 할인된 가격으로 유사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프리퍼드 커스터머와 신규 디스트리뷰터들을 후원하고 회사에서 추천하는 모든 디스트리뷰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액티브 디스트리뷰터

유사나 보상플랜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그룹실적(PGV) 조건을 충족시키는 디스트리뷰터

비즈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는 유사나 보상플랜에 명시된 정의에 따른다.

계약의 해지

디스트리뷰터 계약이나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뜻하며 자발적 해지와 강제 해지가 있다.

계약의 자발적 해지

디스트리뷰터나 프리퍼드 커스터머가 회사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강제 해지

회사의 재량으로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후원수당 제품

후원수당과 보너스가 지불되는 모든 유사나 제품으로 스타터킷과 판매보조 용품은 후원수당 지급 품목에서 제외된다.

디스트리뷰터의 웹사이트 운영 지침

규정3.3(광고)에 관련하여 유사나 비즈니스와 광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골드 디렉터 이상의 직급을 달성한 디스트리뷰터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정책 및 규정 또는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디스트리뷰터에게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취하는 조치에 대해 디스트리뷰터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디스트리뷰터는 웹사이트를 운영할 시 회사가 제시하는 광고에 관한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할 시 회사의 상표, 상호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3. 디스트리뷰터는 웹사이트상에서 자신을 '유사나 독립 디스트리뷰터'로 명시해야 한다.
4. 디스트리뷰터는 웹사이트 방문객으로 하여금 이 사이트가 회사의 공식 사이트라고 믿게 하거나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디스트리뷰터는 회사가 지원하는 모든 행사, 이벤트, 연설문 등에 소개된 내용 등을 무단 촬영, 녹음, 복제, 편집 등을 해서는 안 된다.
6. 기능, 행사, 연설 등의 자료를 기록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7. 디스트리뷰터는 회사 대변인, 대표, 임직원, 다른 디스트리뷰터의 프레젠테이션이나 연설문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 복제 또는 복사 해서는 안 된다.
8. 디스트리뷰터는 회사가 제작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무단 복제 또는 복사 해서는 안 된다.
9.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와 또는 관련 개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된 개인의 이름, 사진이나 이미지, 저작물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을 인쇄매체나 전자 매체를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되도록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0. 유사나의 제품은 반드시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의 연결(Link)을 통해 소개되어야 한다.
11.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에서 정식수입 판매 승인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소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12.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공식 자료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 유사나 제품이 질병의 치료, 치유, 진단, 완화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13. 디스트리뷰터는 유사나 사업기회 또는 유사나 보상플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상담 시 회사에서 제공한 공식적인 문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유사나 사업을 통한 예상 수입이나 자신의 수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수표나 통장 포함)
14.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하고도 진실되게 유사나 제품, 사업기회, 보상플랜, 정책 및 규정을 정확하고 진실 되게 제공해야 한다.

정책 및 규정위반 처리절차

회사 정책 및 규정은 모든 디스트리뷰터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위반 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타 디스트리뷰터의 사업 및 회사와 제품 그리고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정부, 언론매체 또는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적절한 윤리적 사업 관행을 디스트리뷰터에게 교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디스트리뷰터와의 상담을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려 한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 특정 정책이나 절차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계약 불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구두 또는 서면경고
- 디스트리뷰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 조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회사의 보호관찰
- 회사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까지 보상 및 인정의 철회나 유보 또는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참가제한 회사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까지 제품 주문, 회사 프로그램 참가, 유사나 보상플랜상의 승급, 소개자 자격을 포함한 디스트리뷰터의 일부 권리 정지 및 보너스 지급보류

- 회사가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기타 벌칙부과
- 디스트리뷰터 자격 해지

1. 위반처리절차

- 1) 디스트리뷰터의 정책 및 규정이나 기타 계약사항의 위반을 발견한 디스트리뷰터는 위반한 디스트리뷰터에게 회사의 관련 지침과 조항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상의하여 해결토록 해야 한다.
- 2) 위반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가 협조할 의사가 없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위 라인 골드 디렉터에게 자신이 본 위반 행위에 대해 알리고, 그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취한 행동을 알려야 한다.
- 3)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위반 행위의 성격과 모든 관련자들의 성명, ID번호, 주소, 전화번호, 날짜, 시각, 장소 등의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윤리교육부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서면제출 서류 없이 인지도 추측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4) 위반행위가 접수되는 즉시 회사는 위반 디스트리뷰터 및 관련자에게 위반 사항을 통보, 사실 여부에 관한 즉각적인 회신을 요청할 것이다. 회사는 모든 위반에 대한 정보를 엄격한 비밀로 간주한다.
- 5) 위반행위에 관련된 사실과 정황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접수되면, 회사는 정책 및 규정, 기타 계약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6) 만약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각 당사자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 그 후원인 및 후원인의 후원인, 필요한 경우 그의 상위라인 골드 디렉터 직급 이상 최초 3명의 디스트리뷰터에게 서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협조 요청 내용에는 위반행위, 관련 처벌, 그리고 시정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며 회신을 위한 시한이 주어질 것이다.
- 7) 위반 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적절한 추가 제재를 취할 것이다.
- 8) 회사는 고유하고 절대적인 재량권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며, 경고, 자격정지, 금전적 제재 또는 자격 해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 9) 회사가 디스트리뷰터십의 정지나 해지를 결정하면 다음절차가 적용될 것이다.

2. 디스트리뷰터십 정지

- 1) 증빙사실과 함께 보고된 위반행위나 디스트리뷰터의 정책규정, 회사의 어떤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디스트리뷰터의 디스트리뷰터십은 회사에 의해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다. 정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품구매권의 정지
 - 후원수당의 지급정지
 - 리더십보너스의 지급정지
 - 휴가, 핀 등 보상이나 혜택정지
 - 회사주최 미팅에서의 발언권 정지
 - 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회사행사 참가 금지
 - 진행중인 직급/자격 요건 취득의 정지
- 2) 회사는 위반행위를 한 디스트리뷰터의 성명, 위반행위, 처벌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한다.

3. 디스트리뷰터십의 해지 또는 박탈

- 1) 회사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면 사전통보 없이도 언제든지 디스트리뷰터십을 해지 또는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2) 박탈이란 디스트리뷰터십의 완전한 취소와 유사나 디스트리뷰터로서의 권리 소멸을 의미하며, 회사가 관련 디스트리뷰터에게 보낸 서면 통보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유효하다. 디스트리뷰터 계약이 강제 해지된 디스트리뷰터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전 주까지의 후원수당과 보너스만을 지급받게 된다.
- 3) 이중 등록 및 이와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디스트리뷰터로 계속 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디스트리뷰터의 정책 및 규정에 정한바 대로의 정당한 후원인 라인 하에서 일해야만 한다.
- 4) 디스트리뷰터십이 해지되거나 박탈되면, 그 디스트리뷰터는 그 해지나 박탈의 결과로 인해 회사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의제기 절차

- 1) 디스트리뷰터십의 정지, 해지 또는 박탈에 대한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추가정보나 사실을 윤리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주어진 시일 내에 접수되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가 거부될 것이다.
- 2) 이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증빙자료와 추가 증빙자료가 조사 초기에 제공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 3) 회사는 이의 제기 결과를 서면으로 디스트리뷰터에게 통보할 것이며, 이 결정으로 인한 디스트리뷰터의 손실이나 권리의 상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사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한 안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전달하여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시거나 판매하실 경우 아래의 유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건강한 사업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① 과학적 사실 및 인정된 기능성 내용 전달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 시 ①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③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④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 ⑤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⑥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허위, 과대 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 시 ①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③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④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 ⑤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⑥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품의 소분 및 재포장 판매 금지

유사나 모든 제품은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라벨 제작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유사나 제품들을 변형시키거나, 재포장하거나, 재포장된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혹은 재판매용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블렛 제품들을 낱알로 소분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④ 이중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이중 등록 및 유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중 등록이란 현재 디스트리뷰터로 계약을 체결해 있거나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라인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을 중복 등록 시키는 행위이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가명, 법인, 신택, 허위 ID 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디스트리뷰터는 다른 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자신의 하위 라인 조직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른 유사나 디스트리뷰터의 품위나 신용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⑤ 자체 홍보물 제작 금지

유사나에서 공식 제공된 홍보물, 책자, 브로셔 등 본사 심의 및 광고심의필을 완료한 내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상호나 상표,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광고 형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경우 반드시 "유사나 독립 디스트리뷰터" 로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판매도구, 판촉물, 광고, 인쇄물(홍보물) 제작은 골드 디렉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미국 본사의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⑥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교육 수료와 영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법정 교육 수료 후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신규 영업자 교육을 완료하신 분들도 매년 1회 안전 위생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

국가기관(식약처, 서울시, 지역 관청 위생과 등)의 모니터링에 의해 상기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정책 및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분들께서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시어 법규 및 규정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